

의안번호	2115168
의 퇴 인	정점식의원
회 답 일	2022. 04. 22.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168) 비용추계서 요약

I. 재정수반요인

재정수반요인	추계여부	비고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신청대상자 확대 (안 제14조제1호 단서 신설)	○	- 다만, 어촌계 인가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어촌계의 어촌계원은 어촌계 인가시점부터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할 것

II. 비용추계 결과

□ 추가재정소요 : 향후 5년 간 총 595억원, 연평균 119억원

[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2~2026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연평균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신청대상자 확대 (안 제14조제1호 단서 신설)	3,966	7,933	11,899	15,865	19,832	59,495	11,899

차 례

I. 비용추계 결과	1
II. 재정수반요인	1
III. 비용추계의 전제	1
IV. 비용추계 상세 내역	2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2
2.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신청대상자 확대(안 제14조제1호 단서 신설)	3
3. 추계 결과	4

일러두기

-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신청대상자를 “어촌계 인가시점부터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한 자”까지 확대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2년 39억 6,600만원, 2026년 198억 3,200만원 등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594억 9,500만원(연평균 118억 9,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2~2026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연평균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신청대상자 확대 (안 제14조제1호 단서 신설)	3,966	7,933	11,899	15,865	19,832	59,495	11,899

II. 재정수반요인

-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신청대상자 확대(안 제14조제1호)
- 다만, 어촌계 인가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어촌계의 어촌계원은 어촌계 인가시점부터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할 것(단서 신설)

III. 비용추계의 전제

- 개정안에 따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신청대상자를 확대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 발생 가능

- 지원 대상 어촌계원 수 및 지급액 단가는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으로 함

IV.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신청대상자를 확대함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로 대상자 수에 직불금 단가를 곱하여 산출함

<비용추계 산식>

$$\text{추가재정소요} = \sum_t \text{지급대상자 수}_t^{1)} \times \text{경영이양 직접지불금 단가}_t^{2)}$$

이때, t 는 추계연도: 2022~2026년

1) 지급대상자 수

- 사업희망자(연평균 672명) 중 매년 300명을 대상으로 10년 간 지급
- 해양수산부 내부조사 자료

2)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단가¹⁾

- 연 13백만원
- 2018년 어가당 평균소득 26백만원의 50% 수준으로 농업부문 경영이양직접지불금 13백만원 적용
- 추계기간 동안 동일

-
- 1)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5조에 따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어업인의 소득수준, 연간 수산물판매액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방법,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신청대상자 확대(안 제14조제1호 단서 신설)

□ 지원 대상 연령 어촌계원 수

- 사업희망자 사전조사(2020.4.20~4.24) 결과 총 286개의 어촌계에서 6,720명이 경영이양직불제에 참여를 희망

[표 2] 사업대상자 수

(단위: 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희망자	800	640	650	640	680	620	680	700	660	650	6,720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2020년 3월 말 기준

[표 3] 어촌 계원 현황

(단위: 명)

구분	65세	66세	67세	68세	69세	70세	71세	72세	73세	74세	계
계원	3,197	2,652	3,096	3,030	2,995	3,094	3,150	3,263	3,043	2,231	29,751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2020년 3월 말 기준

□ 지급대상자 수

- 만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10년간 지원
- 해양수산부는 2022년부터 연평균 희망자(672명)의 50% 수준인 3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표 4] 지급대상자 수

(단위: 명)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지급대 상자	신규	300	300	300	300	300
	누적	—	300	300	300	300
		—	—	300	300	300
		—	—	—	300	300
		—	—	—	—	300
합계		300	600	900	1,200	1,500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단가

○ 연 13백만원

- 2018년 어가당 평균소득 26백만원의 50% 수준으로 농업부문 경영이양직접지불금 단가 13백만원을 동일하게 적용
- 추계기간 동안 동일

□ 신청대상자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 행정비용은 출장비, 홍보비 등으로 수산직접지불제 운용 시 1.7%를 적용하고 있음

[표 5] 신청대상자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2~2026년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지급대상자(A)	300	600	900	1,200	1,500	4,500
지급 단가(B)	13	13	13	13	13	-
직접지불금 (C = A × B)	3,900	7,800	11,700	15,600	19,500	58,500
행정비용 (D = C × 1.7%)	66	133	199	265	332	995
추가재정소요 (C + D)	3,966	7,933	11,899	15,865	19,832	59,495

3.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2년 39억 6,600만원, 2026년 198억 3,200만원 등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594억 9,500만원 (연평균 118억 9,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2~2026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연평균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신청대상자 확대 (안 제14조제1호 단서 신설)	3,966	7,933	11,899	15,865	19,832	59,495	11,899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비용추계과
과	장 이현경
추계세제분석관	이택균
연 락 처	02-6788-3746
	69potato@nabo.go.kr
